

[제12호의2 서식]

수 입 금 출 납 계 산 서

금액 단위 : 원

영 수 액		납 입 액		미 납 입 액 (B-D)	비 고
본 기 분(A)	본기까지의 누계(B)	본 기 분(C)	본기까지의 누계(D)		

- 기재요령 : (1) 전임 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계를 받은 미납입액이 있을때에는 그 금액을 본기 영수액에 합산하고 "비고"에 부기할 것.
- (2) 각 회계연도 최초 계산서에는 전년도분 미납입액을 "영수액"란의 "본기까지의 누계"란에 합산하고 "비고"에 그 뜻을 부기할 것.